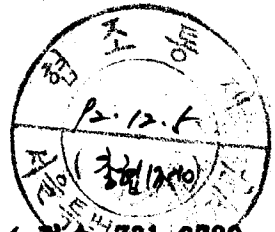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31-6391/4 / 전속 731-6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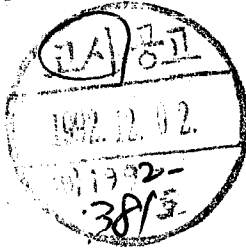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개30321-2379

시행일자 1992. 12. 5.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양 정	
주택국장	전길		
주택개발과장	[Handwritten Signature]	법무담당관 심사필	
개발 1계장	[Handwritten Signature]	(고시안심사)	
기안	이 인 재	협조통제관	협조

제목 봉천제2구역 주택개발재개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도시계획법 제24조(8. 1. 74)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봉천2구역에 대하여 관악구청장 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2. 도시재개발법 제5조(입안및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58조(권한에 위임)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고시를 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및 내용

- . 당초2개 지구중 봉천2-1지구는 토지구 시행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 . 봉천2-2지구는 자력개발 방법으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이를 합동개발시행이 가능토록 변경결정 하는사항임.

첨부 : 1. 고시안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끝 .

( 제 2 안 )

수신 총무처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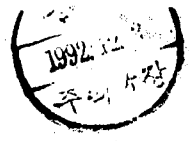
제목 관보게재의뢰

1. 봉천제2구역 주택개발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주택개발재개발 봉천제2구역 사업계획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끝 .

#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봉천제2구역 주택개량제개발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구역지정된 봉천제2구역 주택개량제개발 사업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입안및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결정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

가. 변경사유 및 내용

- . 당초2개 지구중 봉천2-1지구는 토지구 시행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 . 봉천2-2지구는 자력개발 방법으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이를 합동개발시행이 가능토록 변경결정 하는사항임.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끝 .

#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관악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봉천제2구역 주택개량제개발 사업계획변경 결정고시

1. 주택 30321-1891(92. 11. 4)호와관련임

2. 위대호로 주택개량제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요청한 봉천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입안및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관계도서를 해당

과와 관할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증명발급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3. 사업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은 조건을부여 결정하니 사업시행에 반영토록 할것.

가. 사업계획변경결정 조건

- 1) 공원내 건물을정비후 공원으로 기능을 회복토록하되 수목식재등 계획을 구 공원녹지과와 협의 시행할것.
- 2) 사업구역의 확고용지내 건축물을 정비후 대지정리 존치시 도시미관저해, 우기시 토사유출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별도 대책수립 시행토록 계획할것.
- 3) 사업시행인가시 협의내용을 반영되도록할것(협의내용 별첨)

-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  
 3. 협의내용 1부. 끝

# 서울특별시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주택개량제개발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 통보

1. 우리시 관악구 봉천제2구역 주택개량제개발 사업계획을 별첨과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및 내용

- . 당초2개 지구중 봉천2-1지구는 토지구 시행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 . 봉천2-2지구는 자력개발 방법으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이를 합동개발시행이 가능토록 변경결정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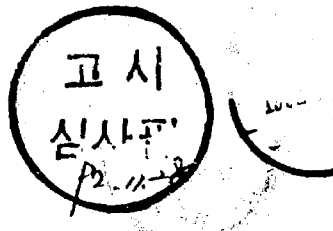
-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사업계획결정도서 1부. 끝



# 주택개량과장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공원과장.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81호



고 시

주택개발계획사업계획변경 결정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21호(84. 4. 24)로 사업  
 계획변경결정된 주택개발계획사업 봉천2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58조~~ 규정 년경상제한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과 일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 가. 계획사업의 명칭 : 봉천2주택개발계획사업
- 나.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7번지, 산94번지일대
- 다. 면 적 : 96,615㎡
- 라. 토지이용계획

지구명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96,615	100	
제 1지구			10,298	(변경없음)	사업완료
제2지구	용도지역	계	86,317	100	
		주거주차장정비	86,317	100	
	시 설	계	86,317	100	
		도 토	11,521	13.35	
		공 원	4,779	5.54	
		공용 의정사	600	0.70	동사무소
		학 교	10,500	12.16	
택 지	58,917	6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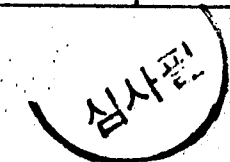
마. 공공시설설치 및 정비계획

1) 도로변경 결정조서

가) 제1지구 :사업시행완료(변경없음)

나) 제2지구

구 분	규 모				사용 형태 기 능	연 장 (㎡)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유 별	번호	폭원(M)					
기 정		광 로	1	40	일반도로 간선도로	27	산86-30	7-366	
"		"	2	40	"	230	7-366	7-416	
결 정		중로1	1	20	국지도로	250	7-366	산94-1	
"		중로2	2	15	"	60	7-416	7-231	
"		소로3	1	6	"	320	산94-10	738-37	
"		소로3	2	6	"	72	38-248	38-261	
도로폐지		소로3	1	6	"	405	7-366	산94-12	
"		소로3	2	6	"	145	산94-9	7-328	
"		소로3	3	6	"	45	7-10	7-231	
"		소로3	4	6	"	355	산94-6	산94-14	
"		소로3	5	6	"	35	738-37	738-37	
"		소로3	6	6	"	240	산94-25	산94-5	
"		소로3	7	6	"	209	산94-6	산98-7	
"		소로3	8	6	"	102	38-10	산98-7	
"		소로3	10	6	"	145	738-37	산94-12	
"		소로3	11	6	"	48	38-70	산94-15	
"		소로3	21	6	"	77	738-37	38-46	



바. 시설결정도서(면적시설)

가) 제1지구 : 사업시행완료(변경없음)

나) 제2지구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시설의 구분
결정	공용의 청사	봉천동 산94-14중 일부	600	동사무소
기정	학교	" 산94중 일부	10,500	국민학교
"	공원	" 산94-1,38번지 일부	4,779	상도근린공원
변경	공원	"	4,779	전체면적, 364,186m <sup>2</sup> 해제 : 875m <sup>2</sup> 추가 : 875m <sup>2</sup>

바. 건축물 및 건축부지정비계획

1) 건축시설계획

택지구분	위치	택지면적(m <sup>2</sup> )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용적율	층수, 높이	용도구성
분양아파트 택지	관악구 봉천동 38, 7번지 일대	42,527	25% 이하	350% 이하	24층 (64M)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임대아파트 택지	관악구 봉천동 7, 산94번지 일대	16,390	"	300% 이하	"	"

사. 사업계획결정도서 : (생략)

\* 사업계획 결정도서는 서울시 주택개발과와 관악구 주택과,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원본대조필